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10155(본소), 2016가합545670(반소) 판결
[공사대금 ·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11. 25.

판결 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27,400,000원 및 그 중 2,704,906,451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822,493,549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각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4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9/1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2016.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1,228,552,309원 및 그 중 10,841,751,334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386,800,9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4.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아부다비 원유 정제공사(TAKREER)로부터 C공사(C Project)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0. 8. 4. 피고로부터 위 C공사 중 철골·기계·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업무범위

1) 원고는 하도급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업무, 서비스, 장비 및 자재를 이행, 체결, 완료, 유지, 제공 및 공급하고, 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거나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하도급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를 체결, 완료,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하여할 책임이 있다(해당 업무, 서비스 또는 자재를 '업무'라 한다). 본 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은 본 요건에 따라 업무를 체결, 완료 및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계약금액(확정단가율을 기준으로 한 잠정적인 총액)

1) 피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금액을 보수로 지급한다.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비율에 따른 금액(직접비): 미화 20,307,000 달러

(2) 확정 금액(간접비, 경비 및 이윤): 미화 14,893,000 달러

2) 직접비는 피고가 승인한 준공도면으로 산정한 업무량을 기준으로 하고 부록 7(비용 요약서 및 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단가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조정된다. 위 단가는 확정 금액이고 직접비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의 완성 및 원고의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대한 모든 보수를 포함한다.

단가는 진행 업무량의 변동이나 환율 변동 또는 자재, 유틸리티, 노무 비용의 등락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면, 하도급대금 중 직접비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는 최종 금액이 아니다.

비록 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 항목의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3) 간접비는 확정 금액이고, 환율 변동, 가격 인상으로 인해 변동되지 않으며 자재, 유틸리티, 노무 비용의 등락으로 인해서도 변동되지 않는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 직접비가 당초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한, 원고는 간접비 외에 어떠한 보상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직접비가 당초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 간접비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조정된다.

5. 계약금액의 지급

1) 선금급

(a) 금액 : 계약금액의 15%

(b) 공제율 : 매 기성금액의 15%

2) 기성금액

(a) 지급 기준 : 월별 기성에 따른 지급기준

(b) 원고는 청구서와 피고가 승인한 공정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업무 개시일

2011년 4월 23.일

9. 업무 완료일

2013년 6월 13.일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1차 변경	38,545,384.15	2011. 4. 23. ~ 2013. 8. 13.
2차 변경	41,587,412.22	2011. 4. 23. ~ 2013. 8. 13.
3차 변경	45,675,137.12	2011. 4. 23. ~ 2013. 8. 13.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사정에 의한 철골공사 착공 지연, 피고의 설계도면 제공 지연, 피고의 자재공급 지연 및 자재 부족, 토목공사로 인한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 폐쇄 등으로 인해 당초 공사계획과 달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웠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4. 8. 피고에게 '① 철골공사의 착공 지연, 자재공급 지연 및 자재 부족, 설계도면 제공 지연, 선행공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가 세 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증액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다. ② 그러나 남은 공정과 향후 투입될 계약금액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그 동안 누적된 한국인 인건비, 현지 외상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 ③ 따라서 피고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원고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2013. 4. 30.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정산하고 직영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3. 4. 11. 원고의 위 공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자재공급 지연 등으로 인한 보상금액으로 합계 미화 12,964,769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향후 5,949,896달러를 증액할 수 있는 예산만 있을 뿐이며, 인건비·장비비 등 All-in-Cost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데 7,136,590달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2013. 4. 30. 기준으로 타절정산하고, 2013. 5.부터는 직영으로 공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원고의 사내이사 D, 현장소장 E과 피고의 P.D. (Project Director) F, P.M.(Project Manager) G, 현장소장 H, 공무부장 I은 2013. 4. 29.과 2013. 4. 30. 피고의 현장사무소에서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 및 직영전환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1) 2013년 5월 이후부터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자금집행은 피고가 선집행하고, 원고가 2013년 4월 말일 기준으로 제출하는 정산자료와 피고의 정산자료에 의하여 양사간 최종합의하는 금액으로 정산한다.
- 2) 정산자료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며 증빙자료 미비 및 부실시 피고가 요청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 제출시 정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원고가 주장하는 과투입 부분 중 피고와 맺은 계약금액 외 원고가 서울 본사에서 위 Project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력운영비용으로 집행하였다는 약 600만 USD의 집행내역과 피고가 선지불한 5,280,000 USD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를 정산자료에 첨부한다.
- 4)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 4월 30.일까지 현지 미지급금 약 600만 USD에 대한 내역을 피고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 7) 5월 이후 발생하는 현장 한국인 인건비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하는 자료에 의하여 국내로 송금한다. 단 원고 본사로 송금한 2013년 4월분 한국인 인건비 585,879,28 AED는 정산시 공제항목에 포함한다.
- 8) 현장에 배치된 모든 인력과 일체의 시설물과 장비, 자재, 공구 등 모든 자산은 C Project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피고가 사용하며 원고 소속 현장 기존 인력 및 현장 작업자 배치, 자산 반출은 Project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피고가 최종 결정한다. 단 원고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시 합의하여 시기를 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선택적 청구원인)

1) 하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철골·기계 및 배관자재를 공급하며, 이 사건 공사와 다른 업체가 실시하는 공사가 서로 간섭받지 않도록 공사일정을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설계도면을 수정·재작성하였고, 일부 설계도면에 관해서는 피고가 설계회사에 설계용역을 맡김에 따라 설계도면 제공이 지연되었다. ② 피고가 철골·기계 및 배관자재 공급업체를 교체함에 따라 철골·기계 및 배관자재 공급이 지연되었다. ③ 다른 업체가 실시하는 토목공사가 지연되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았다. 피고에게 책임 있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인건비, 자재대금(소모성 공 도구 등), 장비대금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위 추가비용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3차 변경계약금액인 45,675,137.12달러를 이미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업체에 대금 4,915,377달러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가 위 추가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금액으로 인정한 53,590,514.12달러에서 위 3차 변경계약금액 45,675,137.12달러와 피고의 대위변제금 4,915,377달러를 공제한 3,000,000달러(= 53,590,514.12달러 - 45,675,137.12달러 - 4,915,377달러)이다. 2016. 11. 22. 현재 미화 달러의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177.10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531,300,000원(= 3,000,000달러 × 1,17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 공사대금청구 원고의 사내이사 D, 현장소장 E과 피고의 P.D. F, P.M. G, 현장소장 H, 공무부장 I은 2013. 4. 29.과 2013. 4. 30.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3차 변경계약금액 45,675,137.12달러에 원고의 현지 외상미지급금 약 490만 달러와 원고 본사 투입비 약 6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를 더한 금액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정산자료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 금액은 53,590,514.12달러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3차 변경계약금액인 45,675,137.12달러를 이미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업체에 대금 4,915,377달러를 변제하였다. 2016. 11. 22. 현재 미화 달러의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177.1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 공사대금 3,531,300,000원{= (53,590,514.12달러 - 45,675,137.12달러 - 4,915,377달러) × 1,17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1) 하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주장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또한 원고의 현장관리능력 및 공사수행능력 부족 등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는 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실제로 53,590,514.12달러를 지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포함하여 53,590,514.12달러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금액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③ 설령 피고의 하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증가된 비용은 변경계약을 통해 전부 계약금액에 반영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손해를 전보받았다.

2) 약정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직영전환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2013. 4. 30.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물량정산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다. 원고와 피고가 53,590,514.12달러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타절정산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

나) 정산에 따른 초과지급금 반환청구

오히려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면(2016. 11. 17. 현재 미화 달러의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175.50원이고, 아랍에미레이트 디르함(AED)1)의 매매기준율은 1디르함당 320.01원이다}, ① 직접비 20,445,760.42달러, ② 간접비 14,893,000달러, ③ FCO(Field Change Order) 금액{= 변경계약 반영분 4,336,663.07달러 + FCO 추가인정분 2,800,683.31달러 - 마이너스 FCO(FCO-FI-SMP002-033) 288,063.36달러 - 마이너스 FCO(FCO-FI-SMP002-045) 1,747,507디르함} 등의 합계액에서, 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구입한 자재대금 1,280,057.05디르함(= 배관 Support 자재 1,244,057.05디르함 + 기계공사용
무수축 그라우팅 자재 36,000디르함), ②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장비대금(= 에어컴프레서
53,711.54디르함 + 650톤 크레인 72,400달러), ③ 공동화장실운영비용 및 약품비용
222,684.36디르함(= 공동화장실운영비용 129,190.41디르함 + 약품비용 93,493.95디르함), ④
2013. 4.분 한국인 인건비 585,879.28디르함 등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48,262,151,41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아래 정산금액
요약표 참조).

[표] 정산금액 요약표

1	직접비	20,445,760.42		24,033,991,374	
2	간접비	14,893,000.00		17,506,721,500	
3	FCO	6,849,283.02	-1,747,507.00	7,492,112,475	
공제 금액	A 지출 자재비		-1,280,057.05	-409,631,057	
B 지출 임대장비비	-72,400.00	-53,711.54	-102,294,430		
C 공동화장실운영비 및 약품비용		-222,684.36	-71,261,222		
D 13. 4월분 한국인 인건비		-585,879.28	-187,487,228		
합계	42,115,643.44	-3,889,839.23	48,262,151,41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3,691,123,544원(= 45,675,137달러2) ×
1,175.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산합의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액의 차액인 5,428,972,132원(= 53,691,123,544원 - 48,262,151,41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청구

또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현지 업체에 대금 4,915,377달러를 변제하였고, 2013. 5. 이후에
추가로 2013. 4. 30.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현지 업체에 대한 대금채무 67,355.75디르함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합계 5,799,580,177원(=
(4,915,377달러 × 1,175.50원) + (67,355.75디르함 × 320.0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1,228,552,309원(= 5,428,972,132원 + 5,799,580,1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공사대금을 실비정산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물량정산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공사대금을 실비정산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는 공사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량정산방식(공사물량 × 단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 정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의 내용 및 자료 제출 경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의 태도, 피고의 기성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량정산방식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3. 4. 8. 피고에게 시공물량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한국인 인건비, 현지 외상미지급금 등 실제 지급해야 할 인건비, 장비대금 등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정산을 요청하였다(갑 제5호증의 1).

나)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① 원고의 현장소장 E은 피고의 현장소장 H가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낸 2013. 5. 4.자 공문(갑 제5호증의 3)에 대한 답신으로 2013. 5. 30. 피고의 현장소장 H와 P.M. G에게 2013. 4.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본사 및 현장 투입비 내역을 보냈고(갑 제12호증), ② 원고의 현장소장 E은 2013. 8. 3. 피고의 현장소장 K와 P.M. G에게 실투입 기준 단가를 적용한 실투입 인건비 및 장비대금 등의 내역을 보냈으며(을 제3호증), ③ 원고의 공무부장 J는 2013. 8. 5. 피고의 과장 L과 공무부장 M에게 2013.

4. 30. 기준으로 본사 및 현장 실투입비 정산내역을 보냈다(갑 제6호증의 1).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본사 투입비 집계표를 제출하였고, 본사 및 지사 투입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원고의 N 대리가 피고의 공무부장 I과 직원 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투입비 자료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2013. 8.까지 정산대금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원고의 실투입비 자료는 물량정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반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의 L 과장이 다른 업체와 같이 실투입비를 기준으로 정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원고의 '당초 견적 대비 실투입 인원/장비비 산정 관련' 공문"(을 제3호증)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4월말 기준 물량정산의 건' 공문"(을 제2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는 물량정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공문에는 직접비가 20,445,760.42달러로, 간접비가 25,842,072.32달러로 기재되어 있어 간접비가 직접비보다 크다. 이는 통상 간접비가 직접비보다 클 수 없는데, 위 공문의 경우 원고가 직접비에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공사물량에 관한 금액만 포함시키고, 간접비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의 간접비(간접노무비, 경비, 이윤 등)뿐만 아니라 설계도면 오류, 자재공급 지연 등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된 직접비(인건비, 장비대금 등)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원고가 위 공문에 직접비와 간접비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간접비에 직접비로 보이는 실제 투입된 비용을 포함시켰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 공문은 이 사건 합의 이후 우선 2013. 4. 30. 기준으로 원고가 실제 시공한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것으로서 위 공문만으로 이 사건 합의에서 물량정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직접비가 20,370,000달러이고, 원고와 피고가 최종적으로 정산한 물량에 따른 직접비가 20,445,760.42달러(을 제2호증)이다. 직접비가 1%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간접비는 없다. 결국 간접비 정산금액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간접비

14,893,000달러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3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직접비가 24,922,333.36달러, 간접비가 16,416,140.69달러, FCO 금액이 4,336,663.07달러로서 그 합계가 45,675,137.12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미 피고와 3차 변경계약에서 간접비를 16,416,140.69달러로 정하였음에도, 피고와 사이에 그 돈보다 적은 금액인 14,893,000달러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간접비를 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바) 이 사건 합의에서 "3) 원고가 주장하는 과투입 부분 중 피고와 맺은 계약금액 외 원고가 서울 본사에서 위 Project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력운영비용으로 집행하였다는 약 600만 USD의 집행내역과 피고가 선지불한 5,280,000 USD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를 정산자료에 첨부한다. 4)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 4월 30.일까지 현지 미지급금 약 600만 USD에 대한 내역을 피고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라고 정하였다. 만일 물량정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원고의 시공물량만 확인하면 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실제로 투입한 비용에 해당하는 위 본사 투입비 600만 달러와 현지 외상미지급금 600만 달러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합의 내용이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 설계도면 오류, 자재공급 지연 등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당초 공사계획과 달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는 인건비, 장비대금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기성금, 즉 원고의 시공물량에 비해 많은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물량정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면 과기성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였을 것이지만,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8.까지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협의를 하면서 과기성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증인 M, H의 각 증언), 2013. 11. 16.이 되어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과기성금, 대위변제금 등 합계 17,823,843.95달러의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45호증)을 보냈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의 현지 지사 명의로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에 계좌를 개설하였다. 원고가 인건비, 장비대금 등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관한 명세서와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의 공무원 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의 현지 지사에 대금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기해 피고의 현지 지사는 위 계좌에서 직접 현지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거나 원고에게 수표를 발행해 주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물량정산방식으로 정산하여 기성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실투입비를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증인 M은 2013. 4.부터 2013. 7.까지 이 사건 공사의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2013. 4. 29.과 2013. 4. 30.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53,590,514.12달러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실비정산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53,590,514.12달러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호증의 2, 3, 4, 갑 제1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정산금액을 정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주고 받은 공문의 내용, 피고의 거절공문 발송 시점, 원고가 피고의 직영공사에 자신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53,590,514.12달러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① 원고의 현장소장 E은 2013. 5. 27. 피고의 현장소장 H에게 2013. 4. 30.을 기준으로 한 정산금액이 직접비 20,446,760.42달러, 간접비 25,842,072.32달러, FCO 금액 7,419,700.60달러 등 합계 53,707,533.34달러라는 공문을 보냈고(을 제2호증), ② 원고의 현장소장 E은 2013. 5. 30. 피고의 현장소장 H와 P.M. G에게 2013. 4.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본사 투입비가 6,068,004달러, 지사 투입비가 256,963달러, 본사 일반관리비가 3,197,260달러, 현장 투입비가 37,490,860.11달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갑 제12호증), ③ 원고의 현장소장 E은 2013. 8. 3. 피고의 현장소장 K와 P.M. G에게 2013. 4. 30.을 기준으로 실투입 기준 단가를 적용한 실투입

인건비 및 장비대금 등이 합계 56,228,805달러라는 공문을 보냈다(을 제3호증).

나) 피고의 현장소장 K을 대리한 M은 2013. 8. 18. 원고의 현장소장 E에게 "원고가 가장 최근에 요구한 정산금액이 56,228,805달러(을 제3호증)인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회의에서 원고는 최종 정산금액이 53,031,545달러임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위 53,031,545달러는 56,228,805달러에서 원고의 본사 일반관리비 3,197,260달러를 공제한 돈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는 위 53,031,545달러에 당초 계약금액, 이전의 모든 청구금액, 2013. 4. 30.까지 수행된 공사대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한다. 원고의 최종 정산요구금액이 53,031,545달러임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갑 제6호증의 2).

다) 이에 대해 원고의 공무부장 J는 피고의 공무부장 M에게 '당초 원고와 피고의 현장소장들이 3차 변경계약금액 45,675,137.12달러에 현지 외상미지급금 4,915,377달러와 원고의 본사 투입비 중 3,000,000달러를 더한 53,590,514.12달러를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위 53,031,545달러와 약 560,000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였다.

라) 또한 피고의 위 2013. 8. 18.자 공문(갑 제6호증의 2)에 대하여 원고의 현장소장 E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3. 8. 19. 피고의 현장소장 K에게 "2. 1) 3차 변경계약금액 45,675,137.12 USD, 2) 현지 외상미지급금 4,915,377.00 USD, 3) 본사 과투입분 3,000,000 USD, 최종 요청계약금액 : 53,590,541.12 USD, 3. 상기 금액은 3차 변경계약금액, 2013년 4월말 이전에 발생한 물량정산금액, 양사가 공사 수행 중 발생하여 합의한 모든 Claim 금액, 기타 모든 금액을 포함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을 제4호증). 원고와 피고의 현장소장들이 피고가 현지 외상미지급금 4,915,377달러와 원고의 본사 투입비 중 3,000,000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현장소장 E이 위 공문에 "2) 현지 외상미지급금 4,915,377.00 USD, 3) 본사 과투입분 3,000,000 USD"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마) 원고의 위 2013. 8. 19.자 공문(을 제4호증)에 대하여 원고의 공무부장 J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피고 본사의 결재를 받기 위해 금액의 항목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현장소장 E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3. 8. 20. 피고의 현장소장 K에게 "1) 물량 정산금액 45,675,137.12 USD, 2) Claim 요청금액 7,915,377.00 USD, 최종 요청계약금액 :

53,590,541.12 USD"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갑 제6호증의 3).

바) 피고의 현장소장 K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 원고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13. 11. 2. 원고의 현장소장 E에게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금액 53,590,541.12달러 지급청구가 실체와 형식이 부족하여 거절되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갑 제6호증의 4). 설령 피고 본사의 결재를 받지 못하여 피고의 현장소장 K이 위와 같은 거절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본사의 결재는 정산금액 지급을 위한 피고의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의 현장소장들이 합의한 내용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사) 원고가 2013. 4.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정산 및 직영전환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갑 제5호증의 1)을 보낼 때 피고가 원고의 인력과 자재를 이용하여 직영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 및 직영전환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직영공사를 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던 원고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아) 이는 이 사건 공사의 타절 후 원고가 피고의 직영공사에 자신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직영공사에 자신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원고에게 이익을 남기지는 않지만,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실비정산방식으로 산정한 정산금액 53,590,514.12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의 직영공사에 원고가 자신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협조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발주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준공예정일까지 완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예산이 부족하여 직영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해외공사의 특성상 원고가 아닌 새로운 업체에게 직영공사를 맡긴다면 비용이 더욱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원고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자)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피고의 현장소장 H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피고를 위한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기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이 사건 합의와 정산금액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의 P.D. F 상무도 이 사건 합의와 정산금액 합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의 약정 공사대금 지급액 피고가 원고에게 3차 변경계약금액인 45,675,137.12달러를 이미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업체에 대금 4,915,377달러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액 3,000,000달러(= 53,590,514.12달러 - 45,675,137.12달러 - 4,915,377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외화채권으로 표시된 통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기준은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1. 24. 현재 미화 달러의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175.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액 3,527,400,000원(= 3,000,000달러 × 1,17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2013. 4. 30.의 다음날인 2013.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3. 4. 30.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지만,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금액과 그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 후 협의를 통해 정산금액이 53,590,514.12달러로 정해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금지급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고가 소장에서 약정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2,704,906,4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이 사건 2016.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약정 공사대금으로 추가로 청구한 822,493,549원(= 3,527,400,000원 - 2,704,906,4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정산된 공사대금 중 잔액 3,527,400,000원 및 그 중 2,704,906,45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4.부터, 나머지 822,493,549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약정 공사대금청구가 환율하락으로 인해 일부 인정되지 않았을 뿐 원고가 청구하는 원금 3,000,000달러는 모두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인 하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산에 따른 초과지급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량정산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정산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량정산방식에 따라 2013. 4. 30.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액은 48,262,151,412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3차 변경계약금액 53,691,123,544원(= 45,675,137달러 × 1,175.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초과 지급한 5,428,972,132원(= 53,691,123,544원 - 48,262,151,4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량정산방식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을 기준(실비정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이 정산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527,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정산에 따른 초과지급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실비정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에서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주장하는 마이너스 FCO-FI-SMP002-033(High Level Transport)과 마이너스 FCO-FI-SMP002-045(KHK, AL MEENA), 배관 Support 자재대금,

공동화장실운영비용 및 약품비용 등을 이미 포함하여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청구

1)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현지 업체에 대금 4,915,377달러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액에서 위 대위변제금 4,915,377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액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바이므로, 별도로 피고의 위 대위변제금 4,915,377달러에 대한 반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2013. 5. 이후에 직영공사를 하면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 업체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현지 업체에 지급하였다. 그 중 2013. 4. 30.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현지 업체에 대한 대금채무 67,355.75디르함(= 10,750디르함 × 320.12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67,355.75디르함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라고 주장한다.

을 제20,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3. 5. 이후 직영공사를 하면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 업체의 청구에 따라 2013. 4. 30.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현지 업체에 대한 대금채무, 즉 P에 대한 대금채무 6,500디르함, Q에 대한 대금채무 1,450디르함, R에 대한 대금채무 2,800디르함 등의 합계 10,750디르함(= 6,500디르함 + 1,450디르함 + 2,800디르함)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대금채무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정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청구금액 67,355.75디르함 중 위 10,750디르함을 초과하여 2013. 4. 30.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현지 업체에 대한 대금채무를 피고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0,750디르함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1. 24.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디르함의 매매기준율이 1디르함당 320.1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3,441,290원(= 10,750디르함 × 320.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3,44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민석

판사김건우

판사지혜선

- 1) 아랍에미레이트(UAE)의 통화이다.
- 2)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차 변경계약금액은 45,675,137.12달러이다. 다만 반소 청구원인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45,675,137달러라고 보고 계산한다.